

91.4.16

웨스트팩 서울지점 철수 취소

감독원선 단체협약안 “노동정책 위배” 제동

을 철수하기로 했던 오스트리아계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최동수)이 철수결정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은행감독원이 노사간에 노조의 인사권 참여조항 등의 노동정책에 위배된다는 단체협약에 제동을 걸고 17일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지는 불투명하다.
웨스트팩은행 최 지점장과 김 조위원장은 지난 13일 그 지점이 왜 노조의 인사권 제는 회사쪽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파업기간의 임금 인상금의 60%를 지급하

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웨스트팩은행 노사가 타결한 단체협약안 중 인사위원회는 노사 같은수로 구성하되 찬반동수일 경우 인사위원장인 지점장에게 결정권한을 준다는 조항과 파업기간중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조항 등이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배제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어긋난다며 단체협약 타결 사실 발표를 중단시킨 뒤 노사합의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쪽과 노조쪽은 이러한 은행감독원의 요구가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

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4분기 무역수지 5억달러 적자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2/4분기(3~6월)중 무역수지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5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5일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전망’을 통해 지난 1/4분기중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44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임에 따

라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1/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38억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최근 엔화약세 및 노동쟁의 등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전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 2/4분기부터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 나는 반면 수입은 원유도입의 단가 인하와 물량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4분기 무역수지가 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는 등 적자 폭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해설

은행쪽 철수위협에 노조 굴복

노-사합의 불구 정부 개입 정상영업 불투명

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으로 노동계에 큰 파문 일었던 오스트리아계 웨스트팩은행의 노동쟁의가 노조(사쪽)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22일간의 장기간 파업 지부를 찍었다.
타결된 단체협약안을 은행쪽의 철수위협에 노조했다는 인상이 짙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던 이 장기화됐던 가장 큰 이번엔 타결된 단체협약 쪽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인사위원회는 노사 구성하되 가부동수일 결하도록 돼 있는 기존의 조항은 회사의 인사권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수정을 요구해왔다.
노조가 단체협약안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단체협약 타결이 회사쪽은 단체협약 유만료를 근거로 일방적으 협약 무효선언을 해버림

으로써 노조의 파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 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는 전처럼 노사같은수로 구성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한을 인사위원장인 지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인사권을 지점장이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원장도 없었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종전의 단체협약과 비교하면 노조가 대폭 후퇴한 셈이다.
또 정부의 희망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고 노조위원장의 조합활동도 연 30일에서 연 15일로 축소됐다.
따라서 이번 단체협약안은 회사쪽의 철수위협에 노조가 어쩔 수 없이 회사쪽안을 수용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선현 노조위원장도 “이번 파업에서 얻은 것은 노조를 유지한 채 회사철수를 막았다는 것 뿐”

이라고 말해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얼마나 수세에 몰렸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노동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 최소한 단체협약의 개악을 막아보려 했으나 정부와 은행쪽의 집요한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단체협약의 대상자인 은행도 문제지만 단체협약 수정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한 정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노동쟁의에서는 은행쪽의 철수위협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쪽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셈이다.
노사 양쪽의 합의로 단체협약이 타결됐음에도 은행감독원이 인사위원회의 노사 같은수 구성과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어긋난다며 단체협약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노동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라도 정부의 노동정책과 어긋나면 바꿔야 한다는 ‘신중 노동법’을 정부가 적용하려다 다 끝난 웨스트팩은행의 노동쟁의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승리자는 은행도 노조도 아닌, 진보적인 단체협약안을 수정하고 노조를 ‘순화’시키는 데 성공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위장철수 여부와 관계없이 철수위협에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나라 외국계 기업의 노동정책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인 것이다.
(신현만 기자)